금산군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4호

# 2026년 제2회 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시설[일반토목])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시설[일반토목])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
| 시설(일반토목) (일반임기제 지방시설7급) | 1명 | 2년 (주40시간) | ■ 토목 등 시설분야 의안·예산안·결산 관련 자료와 설계도서·사업비 등의 기술적 검토 지원<br>■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시설·토목 분야 전문기술 지원<br>■ 주요 시설사업 현황·문제점 분석 및 의원 요구자료 작성 지원<br>■ 의원 현장활동 및 주요 시설사업 점검 지원, 기술검토 보고서 작성<br>■ 그 밖에 의회사무과 업무분장에 따른 시설분야 업무 |

※ 임용기간 만료 전 근무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되, 총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함. 다만,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별표 12]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국 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
| 시설<br>(일반토목)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br>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br>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br>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br>◈ **관련분야 실무경력**<b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출자 · 출연기관, 대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건설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등에서 토목 분야(도로 · 교량 · 하천 · 상하수도 · 농업기반시설 등)의 사업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 건설사업관리 · 공사감독, 사업비 · 인허가 검토, 안전점검 · 유지관리 또는 관련 기술검토 · 연구 · 조사 · 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력<br>– 그 밖에 담당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br>※ 공공기관 등의 범위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 및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함. |

### ▸ 참고사항

1)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및 관계 인사규칙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함.

2)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1호 및 2호는 민간경력(공무원 근무경력 제외), 3호는 공무원 경력으로만 산정하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력은 민간경력으로 봄.

※ 1호의 실무경력은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산정함

3)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만 인정하며, 인턴·사무보조·단순노무 등 단순 보조업무 및 프리랜서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인정 여부는 직위 명칭이 아닌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실제 담당업무로 판단함

4)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같은 기간에 겹치는 경력은 하나만 인정함.

※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기관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위 증빙서류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 주 20시간으로 4년 근무한 경우 2년 인정)

5) 학위 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학위 취득과정 자체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4.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주 40시간(1일 8시간)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준용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등급별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026년 기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 13])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 일반임기제 7급 | 70,782천원 | 50,272천원 |

○ **연봉외 수당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희망 시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 (단, 실업급여에 한함)

##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시험 공고** | 2026. 11. 17.(화) ~ 11. 30.(월)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응시원서 접수** | 2026. 12. 1.(화) ~ 12. 3.(목) | 방문·등기우편 접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2. 10.(목)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시험** | 2026. 12. 16.(수) | 일시·장소 추후 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 21.(월)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신규임용** | 2027. 1. 4.(월) |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금산군의회 홈페이지(http://geumsancouncil.go.kr)「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없는 경우에만 임용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6. 12. 1.(화) ~ 12. 3.(목) / 3일간

○ **(접 수 처)**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충청남도 금산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방문 접수 】**

❖ 접수장소: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041-750-2822)

❖ 접수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응시수수료: 충청남도 금산군 수입증지 구입

(금산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판매)

**【 등기우편 접수 】**

❖ 주 소: (우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인사담당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봉투 외부에 '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 우편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화 요망(의정팀 041-750-2822)

## □ 1차 서류전형(자격기준 등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결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결정 기준**

① 1개 기관에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

② 전체 경력 중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

## □ 2차 면접시험(개별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5개 평정요소별로 점수 평정 (상 70~100점, 중 40~69점, 하 0~39점)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선발, 동점 시 추가면접

▸ **불합격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①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각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②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 임용자격은 임용후보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됨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 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6. 제출서류

### □ 공통사항 (필수)

○ 응시원서(별지 2호 서식 ) 1부

※ **금산군 수입증지(7,000원) 부착 (금산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구매)**

※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담당업무 · 근무시간 등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경력기간 검토용으로 해당 경력기간이 모두 조회되도록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8호 서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9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10호 서식) 1부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6호 서식) 1부

○ 경력증빙자료 1부

※ 경력의 추가 입증이 필요하거나,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나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근무사실 · 기간 · 담당업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 기타 실적 등 개별사항 증빙자료 1부

※ 직무 관련 실적,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내용 불명확 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불인정함.

▫ 학력 · 경력 · 실적 등의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 시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함.

##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공고합니다.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 탈락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 위·변조의 행위를 한 사람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041-750-2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